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 통합 수행〉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99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현행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도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2024. 8. 28.
3. 회부연월일: 2024.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소요제기된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6.8년 소요→2.7년 목표)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무기체계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 그 수행 시기를 앞당기고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연구개발 또는 구매)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u>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u>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u>선행연구(先行研究)</u> 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 ----- <u>소요 결정 시</u> ----- ----- ----- ----- ----- ----- ----- <u>선행연구(先行研究)</u> 를 수행하고, <u>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u> ----- ----- ----- ----- -----

현행	개정안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무기체계 전력화 절차는 각 군 등 소요제기기관이 소요제기를 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을 한 후,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선행연구(방위사업청의 위탁)를 수행하고, 방위사업청은 그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함.

국방부장관은 소요검증을 수행¹⁾하여 국방중기계획에 해당 사업을

1)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요검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훈령)에서는 소요검증을 단위 소요검증과 통합 소요검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③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제출받아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소요검증)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이하 “소요검증”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중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소요검증은 제20조의3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29조(소요검증)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합동참모회의를

반영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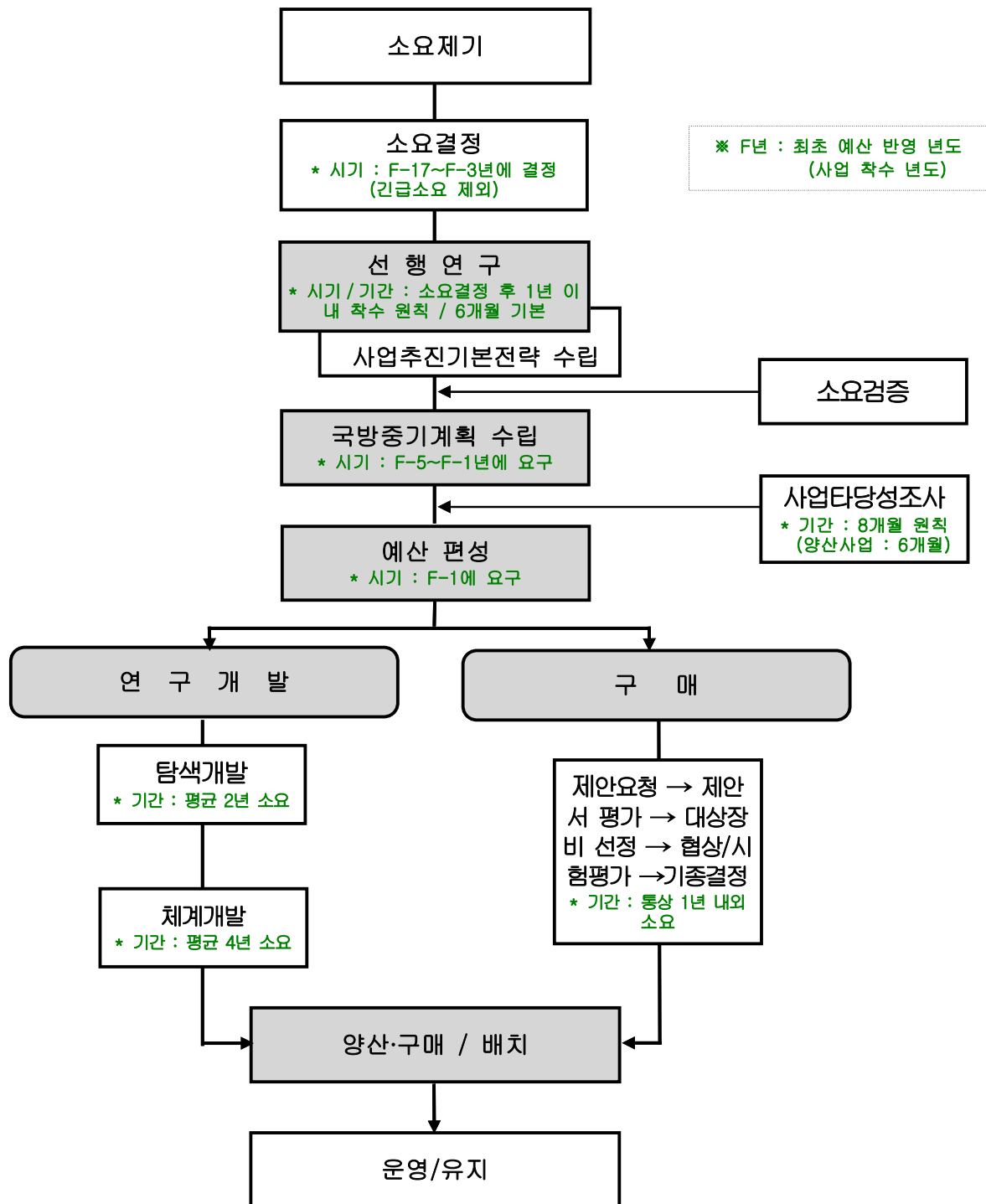
국방중기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고 예산이 편성될 경우, 방위사업청은 크게 ‘연구개발을 통한 양산’과 ‘구매’로 무기체계를 획득하여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기체계의 운영 및 유지는 국방부 및 각 군이 관리하는 체계임.

통해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 사업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이하 ‘소요 검증’이라 한다)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전력소요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무기체계 등의 소요검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위 소요검증 : 개별 소요의 적절성과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판단
2. 통합 소요검증 :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 체계도]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재구성

□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는 무기체계의 소요결정에 관해 일반소요결정과 신속소요결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무기체계의 소요결정은 합동참모의장이 각군 등에서 제기한 무기체계 소요에 대해서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일반소요결정). 다만,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결정을 할 수 있음(신속소요결정).²⁾

그리고 제17조는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연구개발의 가능성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³⁾를 거친 후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시·사변·해외 파병 등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와 시범사업을

2) 「방위사업법」 제15조(소요결정) ①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며,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및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17.11.28., 2024.2.6>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5. 16.]

3) 선행연구는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이후 사업화를 위해 최초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 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 등 사업 추진방법 결정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것임.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란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획득단계를 말한다.
2. "선행연구 조사·분석"이란 선행연구 단계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 판단, 국방과학기술수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 대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조사·분석 활동을 말한다.
3. "선행연구 수행기관"이란 선행연구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을 말한다.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선행연구 관련 「방위사업법」 규정]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研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2024. 1. 16.>

소요결정 절차는 먼저 합동참모본부에서 각 군이 제출한 소요제기서를 검토한 후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는데,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계량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통합개념팀을 운영할 수 있음. 이후

4)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4조(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사업타당성조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다.

1. 이 지침 제12조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책정한 사전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2. 사전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후속 양산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 연구개발사업
3.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국방부 시설 사업 및 전력유지 사업

전력소요서안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고,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소요가 결정됨.

□ 이와 같이 현행은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안⁵⁾의 내용과 선행연구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개정안은 각 군에서 소요제기를 하면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결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석실험(합동참모본부 분석실), 선행연구(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요검증⁶⁾(국방부, 한국

5)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9. 1. 22., 2022. 2. 11., 2024. 4. 30.>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전력화지원요소

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③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9. 1. 22.>

④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9. 1. 22.>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 수준
5. 방산업체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 무기체계의 유지·정비에 관한 사항
7.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6)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단위소요검증’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 소요의 적절성과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 등을 검증함.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29조(소요검증)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 사업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이하 ‘소요검

국방연구원)를 현행의 순차적 방식이 아닌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상호 기능별 순환·환류를 통한 수정 등을 거쳐 최종 소요를 결정하게 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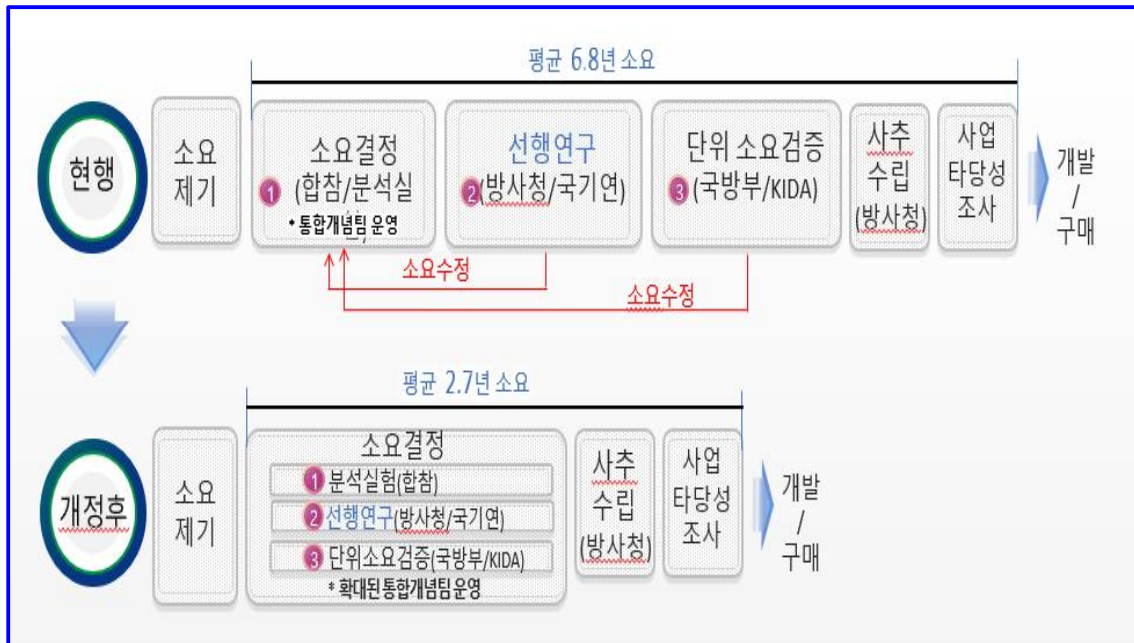
-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체계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절차 기간이 단축되고, 중복되는 항목이 최소화되어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및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결정의 완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증'이라 한다)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반영 및 전력소요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무기체계 등의 소요검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위 소요검증 : 개별 소요의 적절성과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판단
2. 통합 소요검증 :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

[(현행) 순차적 소요기획 → (개정) 통합 소요기획 절차 비교]



*자료: 국방부

□ 다만, 현행 「방위사업법」에서 소요제기, 소요결정, 선행연구, 소요검증 및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연구개발 또는 구매)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준비 및 추진하게 하게 하는 이유는

무기체계 확보에 많은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방위력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여 수준 높은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은 소요결정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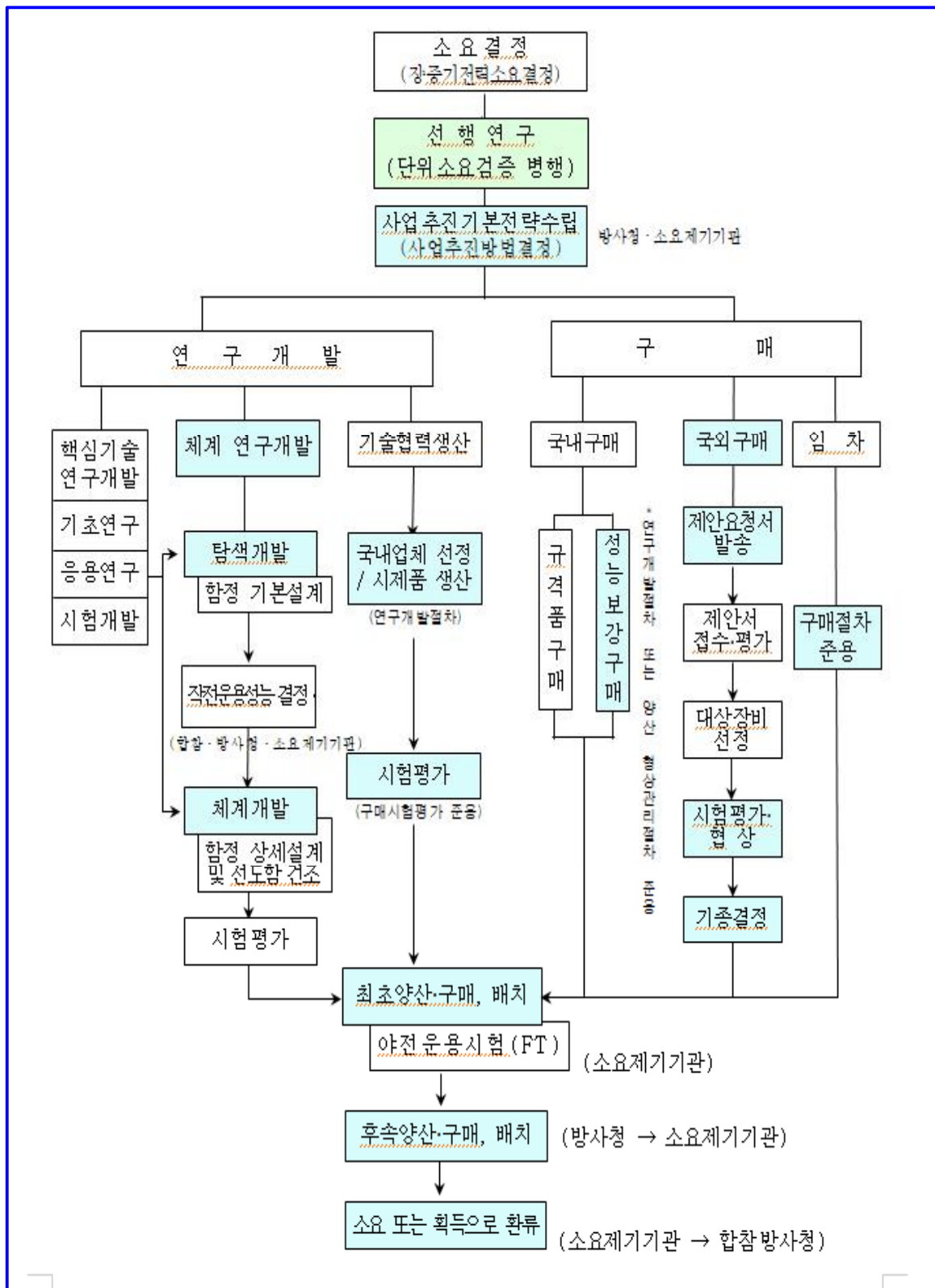
전에 선행연구를 실시하기 때문에 ‘선행연구’ 관련 내용은 법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선행연구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수행되므로 조문 체계상 현행 ‘소요결정’ 조항(제15조~제16조⁷⁾)에서 규율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분석실험·소요검토·선행연구의 각 검토단계를 통합하여 절차상의 중복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소요기획 효율성을 향상하고 전력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2

7) 「방위사업법」 제15조(소요결정),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제16조(소요의 수정)

※ 참고자료: 현행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도



*자료: 국방부